

[별첨3]

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비교 적용

□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

▶ 기본급 + 교통비 + 식대 (1안)

- 기본급, 교통비, 식대를 제외한 기타수당(위험수당, 위생수당, 처우개선수당 등)은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에서 제외되며,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

▶ 기본급 + 교통비 + 식대 + 제수당 (2안)

- 기본급, 교통비, 식대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 합계액

※ 서울시와 타구 생활임금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2015.5월 임금액에 비교적용

○ 생활임금 포함항목 및 금액 대비 비교

(2015.5월임금액 적용)

구 분	생활임금액(6,687원) (기본급+교통비+식대)	생활임금액(6,687원) (총임금액)	생활임금액(7,150원) (기본급+교통비+식대)	생활임금액(7,150원) (총임금액)
적용대상	7개부서 47명	7개부서 47명	10개부서 76명	8개부서 49명
생활임금 보전예상액	86,042천원	59,793천원	153,048천원	110,807천원

□ 생활임금 적용방법

○ 주40시간(월209시간)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: 월액 기준 비교 적용

- 생활임금 기준월액(A) 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(B)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
- 두 월액 간 차액(A-B)을 '생활임금보전수당'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

○ 주40시간(월209시간)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: 근로시간 비례적용

- 통상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(209시간)과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 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율 산정
예) A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00시간이면,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은 47.8%임(100/209)
- 통상근로자(월209시간) 생활임금 기준월액(시급 6,687원인 경우 1,397,583원)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해당 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산정
예) 1,397,583원×47.8%=668,044원(A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)

- 해당 근로자의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을 합산한 월액과 생활임금 기준 월액 간 차액을 '생활임금보전수당'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

〈근로기준법〉
제18조(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)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

□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및 생활임금 보전 예상액 상세현황

○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(구비 100%)

- 직접고용 근로자 : 총 14개부서 114명
- 도시관리공단 : 사무보조, 시설관리, 주차단속, 강사 등 35명

○ 생활임금 보전 예상액 기준일 : 2015.5.31

◆ 검토기준 1. ◆

- 생활임금 : 1,397,583원(시급 6,687원 기준)
- 2015.5.31 임금기준(각 임금 차액 × 인원 × 근무개월)

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(기본급+교통비+식대) 및 생활임금 보전 예상액 : 7개부서 47명, 86,042천원

담당업무	기본급+교통비+식대	인원	산 식	금 액	비고
공원 및 산림관리	1,128,000원	34명	155,904원×34명×12개월	63,608,832원	푸른도시과
불법광고물 단속보조	1,175,000원	6명	108,904원× 6명×12개월	7,841,088원	건설관리과
청사관리,무단투기단속지원	1,080,000원	5명	203,904원× 5명×12개월	12,234,240원	보건소(4명),청소행정과(1명)
직업상담사	1,185,000원	1명	98,904원× 1명×12개월	1,186,848원	일자리경제과
장애인재활운동실관리	1,186,320원	1명	97,584원× 1명×12개월	1,171,008원	사회복지과
합 계				86,042,016원	

②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(총임금액) 및 생활임금 보전 예상액 : 7개부서 47명, 59,793천원

담당업무	총임금액	인원	산 식	금 액	비고
공원 및 산림관리	1,175,000원	34명	108,904원×34명×12개월	44,432,832원	푸른도시과
불법광고물 단속보조	1,220,000원	6명	63,904원× 6명×12개월	4,601,088원	건설관리과
청사관리,무단투기단속지원	1,125,000원	5명	158,904원× 5명×12개월	9,534,240원	보건소(4명),청소행정과(1명)
직업상담사	1,130,000원	1명	53,904원× 1명×12개월	646,848원	일자리경제과
장애인재활운동실관리	1,235,750원	1명	48,154원× 1명×12개월	577,848원	사회복지과
합 계				59,792,856원	

③ 도시관리공단 : 생활임금 보전 대상자 없음

◆ 검토기준 2. ◆

- 생활임금 : 1,495,000원(시급 7,150원 기준)
- 2015.5.31 임금기준(각 임금 차액 × 인원 × 근무개월)

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(기본급+교통비+식대) 및 생활임금 보전 예상액 : 10개부서 76명, 153,048천원

담당업무	기본급+교통비+식대	인원	산 식	금 액	비고
공원 및 산림관리	1,128,000원	34명	245,397원×34명×12개월	100,121,976원	푸른도시과
불법광고물 단속보조	1,175,000원	6명	198,397원× 6명×12개월	14,284,584원	건설관리과
청사관리,무단투기단속지원	1,080,000원	5명	293,397원× 5명×12개월	17,603,820원	보건소(4명),청소행정과(1명)
교통유발금업무보조	1,388,616원	5명	34,781원× 5명×12개월	2,086,860원	교통행정과
방역소독	1,320,000원	2명	53,397원× 2명×12개월	1,281,528원	보건소(지역건강과)
플레이버스운영	1,088,000원	2명	56,498원× 2명×12개월	1,355,952원	지역활성화과
직업상담사	1,185,000원	1명	188,397원× 1명×12개월	2,260,764원	일자리경제과
장애인재활운동실관리	1,186,320원	1명	187,077원× 1명×12개월	2,244,924원	사회복지과
단속업무	1,315,800원	20명	49,200원×20명×12개월	11,808,000원	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
			합 계	153,048,408원	

②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(총임금액) 및 생활임금 보전 예상액 : 8부서 49명, 110,087천원

담당업무	기본급+교통비+식대	인원	산 식	금 액	비고
공원 및 산림관리	1,128,000원	34명	198,397원×34명×12개월	80,945,976원	푸른도시과
불법광고물 단속보조	1,175,000원	6명	153,397원× 6명×12개월	11,044,584원	건설관리과
청사관리,무단투기단속지원	1,080,000원	5명	248,397원× 5명×12개월	14,903,820원	보건소(4명),청소행정과(1명)
플레이버스운영	1,088,000원	2명	22,498원× 2명×12개월	539,952원	지역활성화과
직업상담사	1,185,000원	1명	143,397원× 1명×12개월	1,720,764원	일자리경제과
장애인재활운동실관리	1,186,320원	1명	137,647원× 1명×12개월	1,651,764원	사회복지과
			합 계	110,806,860원	

□ 우리구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(안) ⇒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

‘임금총액’을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“기본급+교통비+식대”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 대한 효과성이 가장 크며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안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.